

의안번호	2209650
의 퇴 인	강선영 의원
회 답 일	2025.5.21.
추계번호	25E17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교 및 부사관 등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교 및 부사관 등에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6년 324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1,376억원(연평균 2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본 추계는 추계대상을 초급간부(임관 5년차 이하의 중위, 소위 및 하사)에 대한 급여 비과세 시의 세수효과로 한정된 결과로, 비과세 적용대상 장교 및 부사관의 범위, 인원 규모, 향후 급여 변화 등에 따라 실제에 비해 과소 또는 과대추계되었을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장교 및 부사관 등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 (안 제12조제3호)	-324	-329	-230	-245	-248	-1,376	-275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 (비과세소득)	○ 비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 추가 - 단, 비과세 기간은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¹⁾으로 한정	

1)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비과세소득)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정기회 중 통과되어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추계기간을 2026~2030년으로 설정
 -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시 원천징수세액이 0이 되므로 연말정산 등에 따른 발생 연도와 귀속연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
- 추계대상은 초급간부(임관 5년차 이하의 소위, 중위 및 하사)가 비과세 적용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시의 세수효과로 설정
 - 개정안은 간부와 병(兵)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급여 등 수준에서 병과 주로 비교되는 초급간부(임관 5년차 이하의 소위, 중위 및 하사)로 대상 한정
 - 개정안은 비과세를 적용받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비과세 적용기간) 육군 및 해병대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
- 장교 및 부사관 등의 연평균 급여액에 「국세통계연보」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에 따른 총급여규모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소득세수 감소분을 구한 후, 장교 및 부사관 등의 급여 지급인원, 신규 임관인원 등 비과세 대상인원을 곱해 총 세수효과 산출
 - 군종별 2026년 이후 최초의 비과세 적용기간(육군 및 해병대: 2026~2028년, 해군: 2026~2028년 2월, 공군: 2026~2028년 3월)에는 2026년 이전부터 근무 중인 인원에 대하여도 급여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초급간부 급여 지급인원(현원)을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인원 산출

- 군종별 최초의 비과세 적용기간이 도과한 후(육군 및 해병대: 2028~2030년, 해군: 2028년 3월~2030년, 공군: 2028년 4월~2030년)에는 기존 인원에 대한 급여 비과세가 종료되므로 제도 도입 후 신규 임관된 초급간부로서 비과세 적용기간이 남아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인원 산출
 - 추계기간 동안 초급간부 급여 지급인원 및 신규 임관인원은 2024년 기준 급여 지급인원과 신규 임관인원에 국방부의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연평균 초급간부 인원 감축율(0.91%)을 적용하여 산출

[표 2] 초급간부 임관시기별 비과세 적용기간(세수효과 발생연도) 예시: 해군

	2026	2027	2028		2029		2030	
			~2월	3월~	~2월	3월~	~2월	3월~
2025년 이전 임관 및 2026년 신규 임관								
2027년 신규 임관								
2028년 신규 임관								
2029년 신규 임관								
2030년 신규 임관								

- 주: 1. 음영(■)은 해당 시기에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수효과가 발생함을 의미
 2. 2028년 2월까지의 2026년 신규 임관인원 및 2025년 이전에 임관되어 기 근무중인 초급간부 전체에 대하여 급여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급여 지급인원(현원)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인원 산정
 3. 2028년 3월부터는 2026년 이후 신규 임관인원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신규 임관인원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인원 산정
 4. 신규 임관은 매년 1월 1일 이루어진다는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초급간부는 매년 1월 1일 신규 임관되며, 소위는 임관 1년 후 전원 중위로 진급한다고 가정
 - 신규 임관된 초급간부의 휴직, 퇴직 등 결원은 고려하지 않음
- 추계기간 동안 「국세통계연보」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른 총급여규모별 실효세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동일한 총급여 구간에 속한 경우 실효세율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추계 방법

(1) 초급간부 1인당 연평균 급여 및 비과세 규모 현황, 인원 규모

1) 초급간부 1인당 연평균 급여 현황 및 비과세 규모

□ 2024년 기준 급여를 지급받은 초급간부(임관 5년차 이하의 중위·소위 및 하사)에 대한 1인당 연평균 급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군종별 초급간부 1인당 연평균 급여: 2024년

(단위: 만원)

구 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	중위	3,939	4,122	3,920	4,045
	소위	3,137	3,511	3,235	3,147
부사관	하사	3,663	3,926	3,549	3,697

주: 1. 5년 이내 복무자들에 대한 계급별 급여지급 개월 수를 이용하여 작성된 연평균 급여
2. 휴직 및 사고인원은 제외
3. 연중 진급 인원은 연도 말 해당 진급 계급 인원내 포함하여 작성됨
4. 장기 및 단기 복무 유형 등 상세구분에 제한이 있으므로 자료 이용 및 해석에 유의 필요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5년 이후 초급간부 연평균 급여는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²⁾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 2025년은 2024년 말 결정된 공무원임금 상승률(3.0%) 적용

[표 4] 추계기간 동안 군종별 초급간부 연평균 급여

(단위: 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육군	중위	4,155	4,254	4,357	4,461	4,568
	소위	3,309	3,388	3,469	3,553	3,638
	하사	3,864	3,956	4,051	4,149	4,248
해군	중위	4,347	4,452	4,559	4,668	4,780
	소위	3,703	3,791	3,882	3,976	4,071
	하사	4,140	4,240	4,341	4,446	4,552
공군	중위	4,135	4,234	4,336	4,440	4,546
	소위	3,412	3,494	3,578	3,664	3,752
	하사	3,743	3,833	3,925	4,019	4,115
해병대	중위	4,266	4,368	4,473	4,580	4,690
	소위	3,319	3,399	3,480	3,564	3,649
	하사	3,899	3,993	4,088	4,186	4,28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전망(2025.4.)(%) (2026) 2.4 (2027) 2.4, (2028) 2.4, (2029) 2.4, (2030) 2.4

□ 「국세통계연보」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총급여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을 1인당 총급여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실효세율은 다음과 같음

- 동일한 총급여 구간에 속한 경우 실효세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총급여 규모별 실효세율은 2023년 이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표 5] 2023년 귀속 총급여 규모별 실효세율

(단위: 명, 백만원, %)

총급여 규모	총급여		결정세액		실효세율 [(D/C)/(B/A)]
	총 인원(A)	금액 합계(B)	총 인원<C>	금액 합계(D)	
1천만 이하	2,868,628	14,344,367	2,868,628	10	0.00
1.5천만 이하	1,275,608	16,430,105	1,275,608	1,904	0.01
2천만 이하	1,288,350	23,264,376	1,288,350	52,007	0.2
3천만 이하	4,019,286	104,958,385	4,019,286	529,590	0.5
4천만 이하	3,246,363	115,903,083	3,246,363	1,257,773	1.1
4.5천만 이하	1,180,287	51,330,011	1,180,287	1,018,992	2.0
5천만 이하	976,930	47,434,621	976,930	1,250,162	2.6
6천만 이하	1,524,472	85,433,744	1,524,472	3,047,716	3.6
8천만 이하	1,942,817	137,015,112	1,942,817	6,980,087	5.1
1억 이하	1,136,405	102,881,980	1,136,405	7,654,743	7.4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모두 고려하여 산출

자료: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4-2-4)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초급간부 인원 규모

□ 2024년 기준 급여를 지급받은 초급간부 인원(현원)은 다음과 같음

[표 6] 군종별 초급간부 급여 지급인원(현원): 2024년

(단위: 명)

구 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	중위	9,668	1,180	2,126	673
	소위	3,834	480	890	236
부사관	하사	19,071	4,416	5,621	2,214

주: 1. 5년 이내 복무자들에 대한 계급별 급여지급 개월 수를 이용하여 작성된 연평균 급여

2. 휴직 및 사고인원은 제외

3. 연중 진급 인원은 연도 말 해당 진급 계급 인원에 포함하여 작성됨

4. 장기 및 단기 복무 유형 등 상세구분에 제한이 있으므로 자료 이용 및 해석에 유의 필요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4년 기준 초급간부 신규 임관인원은 다음과 같음

- 초급간부는 매년 1월 1일 임관되고, 소위는 신규 임관 1년 후 중위로 전원 진급한다고 가정

[표 7] 초급간부 신규 임관인원: 2024년

(단위: 명)

구 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	중위	231	46	55	1
	소위	3,860	483	907	238
부사관	하사	4,350	860	1,176	481

자료: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5년 이후 추계기간 동안 초급간부 급여 지급인원 및 신규 임관인원은 국방부의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연평균 초급간부 인원 감축율(0.91%)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제

□ 앞서 산출한 초급간부 연평균 급여에 총급여 구간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1인당 세수감소분을 구하고, 1인당 세수감소분에 연도별 비과세 대상인원을 곱해 연도별 총 세수효과를 추계함

- 군종별로 비과세 적용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군종별로 구분하여 세수효과 추계

(2) 육군 및 해병대 소속 초급간부에 대한 세수효과

□ (비과세 대상인원) 2026~2027년의 경우 초급간부 신분 및 계급별 급여지급 인원(현원)을 적용하고, 2028년 이후의 경우 2027년 이후 초급간부 신규 임관인원으로서 비과세 적용기간이 남아있는 인원을 적용

- 육군 및 해병대의 비과세 적용기간은 2년이므로 2027년까지는 2026년 이전에 임관되어 근무 중인 인원에 대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되고, 2028년 이후는 제도 시행 후 새로 임관되어 비과세 적용기간이 남아있는 초급간부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적용됨

[표 8] 연도별 비과세 대상인원: 육군, 해병대

(단위: 명)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육군	중위	9,493	9,406	4,203	3,942	3,906
	소위	3,765	3,730	3,721	3,688	3,654
	하사	18,725	18,555	8,426	8,349	8,273
해병대	중위	661	655	233	231	229
	소위	232	230	229	227	225
	하사	2,174	2,154	932	923	915

주: 1. 2026~2027년 비과세 대상인원은 급여 지급인원(현원) 기준

2. 2028~2030년 비과세 대상인원은 신규 임관인원 기준

[예시: 2028년 육군 비과세 대상인원 - 2027~2028년 신규임관 인원

- 중위 4,203명 = 2028년 신규임관 중위 223명 + 2027년 신규임관 중위 225명
+ 2028년 중위 승진자(2027년 신규임관 소위) 3,756명

- 소위 3,721명 = 2028년 신규임관 소위 3,721명(2027년 신규임관 소위는 중위 승진)

- 하사 8,426명 = 2028년 신규임관 하사 4,194명 + 2027년 신규임관 하사 4,232명]

자료: 국방부 및 각 군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앞서 제시한 비과세 대상인원을 바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표 9]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에 따른 세수효과: 육군, 해병대

구 분		육군			해병대		
		중위	소위	하사	중위	소위	하사
20	1인당 세수 감소분(만원)	109	36	42	112	36	42
26	비과세 대상인원	9,493	3,765	18,725	661	232	2,174
	세수효과(억원)	104	14	79	7	1	9
20	1인당 세수 감소분(만원)	112	37	43	115	37	43
27	비과세 대상인원	9,406	3,730	18,555	655	230	2,154
	세수효과(억원)	105	14	80	8	1	9
20	1인당 세수 감소분(만원)	115	38	107	118	38	108
28	비과세 대상인원	4,203	3,721	8,426	233	229	932
	세수효과(억원)	48	14	90	3	1	10
20	1인당 세수 감소분(만원)	118	39	109	121	39	110
29	비과세 대상인원	3,942	3,688	8,349	231	227	923
	세수효과(억원)	46	14	91	3	1	10
20	1인당 세수 감소분(만원)	120	39	112	124	40	113
30	비과세 대상인원	3,906	3,654	8,273	229	225	915
	세수효과(억원)	47	14	93	3	1	10

자료: 국방부 및 각 군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해군 및 공군 소속 초급간부에 대한 세수효과

□ 해군 및 공군의 비과세 대상인원은 다음과 같음

- (해군) 2026~2028년 2월의 경우 초급간부 신분 및 계급별 급여지급 인원(현원)을 적용하고, 2028년 3월 이후의 경우 2027년 이후 초급간부 신규 임관인원으로서 비과세 적용기간이 남아있는 인원을 적용
- (공군) 2026~2028년 3월의 경우 초급간부 신분 및 계급별 급여지급 인원(현원)을 적용하고, 2028년 4월 이후의 경우 2027년 이후 초급간부 신규 임관인원으로서 비과세 적용기간이 남아있는 인원을 적용
 - 해군과 공군의 비과세 적용기간은 각각 2년 2개월, 2년 3개월이므로 2028년 2월 또는 3월까지의 2026년 이전에 임관되어 근무 중인 인원에 대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되고, 2028년 3월 또는 4월 이후는 제도 시행 후 새로 임관되어 비과세 적용기간이 남아있는 초급간부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적용됨

[표 10] 연도별 비과세 대상인원: 해군, 공군

(단위: 명)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2.	3.~12.	1.~2.	3.~12.	1.~2.	3.~12.
해군	중위	1,159	1,148	1,138	559	1,069	554	1,059	549
	소위	471	467	463	466	461	461	457	457
	하사	4,336	4,297	4,257	1,666	2,488	1,651	2,466	1,636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3.	4.~12.	1.~3.	4.~12.	1.~3.	4.~12.
공군	중위	2,087	2,068	2,050	989	1,907	980	1,899	971
	소위	874	866	858	874	866	866	859	859
	하사	5,519	5,469	5,419	2,278	3,401	2,257	3,370	2,237

주: 1. 해군 2026~2028년 2월(공군 2028년 3월)의 비과세 대상인원은 급여 지급인원(현원) 기준
 2. 해군 2028년 3월~2030년, 공군 2028년 4월~2030년의 비과세 대상인원은 신규 임관인원 기준

[예시: 2029년 1~2월 해군 비과세 대상인원 - 2027~2029년 신규임관 인원

- 중위 1,069명 = 2027~2029년 신규임관 중위 133명

+ 2029년 중위 승진자(2028년 신규임관 소위) 466명

+ 2028년 중위 승진자(2027년 신규임관 소위) 470명]

- 소위 461명 = 2029년 신규임관 소위 461명(2027~2028년 신규임관 소위는 중위 승진)

- 하사 2,488명 = 2027~2029년 신규임관 하사 2,488명]

자료: 국방부 및 각 군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1]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에 따른 세수효과: 해군, 공군

구 분			해군			공군		
			중위	소위	하사	중위	소위	하사
2026	1인당 세수 감소분(만원)		115	40	109	109	37	41
	비과세 대상인원		1,159	471	4,336	2,087	874	5,519
	세수효과(억원)		13	2	47	23	3	22
2027	1인당 세수 감소분(만원)		117	41	112	112	38	42
	비과세 대상인원		1,148	467	4,297	2,068	866	5,469
	세수효과(억원)		13	2	48	23	3	23
2028	1인당 세수 감소분(만원)		120	42	114	114	39	43
	비과세 대상 인원	1~2월 (1~3월)	1,138	463	4,257	2,050	858	5,419
		3~12월 (4~12월)	559	466	1,666	989	874	2,278
		세수효과(억원)	8	2	24	14	3	13
2029	1인당 세수 감소분(만원)		123	43	117	117	40	106
	비과세 대상 인원	1~2월 (1~3월)	1,069	461	2,488	1,907	866	3,401
		3~12월 (4~12월)	554	461	1,651	980	866	2,257
		세수효과(억원)	12	2	21	14	3	27
2030	1인당 세수 감소분(만원)		126	107	120	120	41	108
	비과세 대상 인원	1~2월 (1~3월)	1,059	457	2,465	1,899	859	3,370
		3~12월 (4~12월)	549	457	1,636	971	859	2,237
		세수효과(억원)	8	5	21	14	3	27

주: 1. 2026~2028년 2월(공군의 경우 2028년 3월) 비과세 대상인원은 급여 지급인원(현원) 적용

2. 2028년 3월(공군의 경우 2028년 4월)~2030년 비과세 대상인원은 비과세 적용기간(2년 2개월 또는 3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초급간부로서 2026년 이후 신규 임관된 인원을 적용(예시: 2029년 해군의 경우 2월까지의 2027~2029년 신규 임관인원, 2029년 3월부터는 2028~2029년 신규 임관인원)

자료: 국방부 및 각 군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각 군 소속 초급간부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시의 세수효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12]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육군	-196	-199	-152	-152	-154
해군	-62	-63	-34	-35	-34
공군	-48	-49	-31	-45	-45
해병대	-17	-18	-14	-14	-14
계	-324	-329	-230	-245	-2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교 및 부사관 등에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6년 324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1,376억원(연평균 2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본 추계는 추계대상을 초급간부(임관 5년차 이하의 중위, 소위 및 하사)에 대한 급여 비과세 시의 세수효과로 한정된 결과로, 비과세 적용대상 장교 및 부사관의 범위 및 인원 규모, 향후 급여 변화 등에 따라 실제에 비해 과소 또는 과대추계되었을 수 있음

[표 1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장교 및 부사관 등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 (안 제12조제3호)	-324	-329	-230	-245	-248	-1,376	-275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